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기금 규정

제정 2015.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및 성의교정,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발전기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출연된 발전기금이 기부자들의 출연의도에 따라 투명하게 모집, 사용, 보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료원 및 산하기관에서 조성하는 발전기금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단, 특별 기부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모금기관에서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 물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기부금품을 총칭한다.
2. **모금기관:** 제2조의 의료원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3. **모금부서:** 전호의 모금기관에서 모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4. **목적별 계좌:** 모금기관에서 발전기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분류한 후, 분류된 기금별 관리를 위해 개설한 금융기관 계좌를 말한다.
5. **위임기부금:**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모금기관에 사용처를 위임한 발전기금을 말한다.
6. **약정:** 기부자가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7. **마감:** 모금부서에서 계좌에 입금된 발전기금을 기부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입결의서를 발생시키면 재무관리부서에서 수입결의서의 결재 및 승인이 완료되어 더 이상 데이터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를 말한다.
8. **배분:** 의료원 발전기금 관리 계좌로 입금된 발전기금에 대하여 기부자 의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처 또는 위임기부금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용처로 발전기금을 원내전출 또는 계좌이체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모금원칙) ① 모든 발전기금의 모금은 목적을 정확하게 잠재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기부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② 발전기금의 모금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홈페이지, 소식지, 문자메시지, 서신 등을 통해서 발전기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발전기금의 내용이 기관 이념에 부합하고,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현행법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도록 모금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분장) ① 의료원 및 산하기관의 발전기금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은 성의교정 발전기금팀에서 주관하며, 산하기관은 각 기관 기획팀에서 주관한다. 단, 의료원 및 성의교정 단위기관의 발전기금 관련 업무는 발전기금팀에서 주관한다.

- ② 성의교정 발전기금팀은 발전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금 업무 총괄 기능
2. 전사적 모금 기획 및 실행 관리
3. 발전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4. 학교법인에 발전기금 현황 보고
5. 발전기금 관련 제 위원회 운영
6. 제③항의 의료원 및 성의교정에 대한 단위기관 발전기금 관련 업무
7. 기타 발전기금과 관련된 업무

③ 각 산하기관 기획팀은 발전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금 관련 기관 내 업무 분장
2. 단위 기관 모금 기획 및 배분 발전기금 관리
3. 의료원에 발전기금 현황 보고
4. 발전기금 관리부서 선정 및 관리
5. 단위 기관 내 발전기금 관련 제 위원회 운영
6. 기타 단위 기관 내 발전기금과 관련된 업무

제6조(위원회) 의료원 및 산하기관 발전기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CMC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의료원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CMC발전기금모금실무위원회(이하 '의료원 모금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산하기관에는 병원발전기금실무위원회(이하 '병원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모금부서) 모든 부서는 모금을 할 수 있으며, 모금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금의 목적 및 명칭을 포함한 모금활동 계획을 기관장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모금상품 개발) 모금상품은 모든 모금기관에서 개발이 가능하며 상품의 명칭, 목적, 기간 및 종류를 명시하여 기관 위원회(병원 기금위원회)의 심의와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의료원장에게 보고 후에 시행한다.

제9조(모금절차 및 방법)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모금한다.

1. 현금의 경우 무통장,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교직원의 경우 급여공제, 지로 등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다.
2.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경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학교법인 정관」 등을 준거해야 한다.
3. 부동산의 경우 취득 및 처분 시 학교법인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4. 유가증권의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모집이 가능하며 「기본재산」으로 모집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하고 「보통재산」으로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5. 유가증권의 경우 기부금관리시스템에 유가증권임을 등록하고, 재무관리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한다.
6. 현물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감정 평가액을 첨부하여 현물을 수령 후 기부금관리시스템에 감정 평가액을 등록하여 수입결의(대체결의) 한다.

7. 현금 또는 현물 등 발전기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한다.

제10조(약정) ① 모든 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직접 작성한 약정서 또는 그와 대등한 효력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등 포함)를 통해서 약정이 이루어진다.

② 기부금 약정은 전화, 메일, 팩스, 대면 행사, On-Line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가능하며, 약정을 접수한 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약정서에 기부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자의 서명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부금관리시스템에 내용이 등록된 약정서와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약정서를 접수한 후에는 기부금관리시스템에 발생기준 익일까지 등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약정서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납입방법, 사용처, 기부자 권리보호를 위한 안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약정서는 Digital 정보로 스캔(scan)한 후 기부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모금기관 간에 공유한다.

⑥ 일천만원 이상 약정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 보직자에게 사안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납입) ① 발전기금이 입금되면 목적별 계좌 관리부서에서는 일일 단위로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수입결의서를 발생시킨다.

② CMS의 경우 성의교정 발전기금팀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③ 각 산하기관에서는 급여공제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급여지급 5일전까지 기부금 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④ 납입내역을 기부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수입결의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부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⑤ 납입내역을 전송 받은 재무관리부서에서는 계좌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을 확인 후에 최종 입금 처리한다.

⑥ 입금 처리가 완료된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부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해야 한다.

1. 익명으로 기부한 경우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3.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4. 기타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배분) ① 발전기금의 배분은 정기배분과 수시배분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배분은 기부자에 의해서 사용처가 확정된 기부금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납입발생 익월에 사용처가 속한 기관으로 원내전출 또는 계좌이체 한다. 다만 긴급하게 기부금을 배분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의료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리 배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시배분은 사용기관 및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익명으로 기부된 발전기금 또는 위임기부금, 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용처를 확정하고 배분한다.

제13조(사용) ① 발전기금은 모금목적과 기부자 출연의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위임기부금은

제12조 제③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이자수익은 목적별 계좌 단위로 관리하며, 발생된 이자는 목적별 계좌의 사용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③ 사용기관이 기부자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최종 사용처가 확정 되지 않았더라도 배분을 수행하고, 최종 사용처는 병원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모금기관이 아닌 타 산하기관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부금은 의료원으로 전출한 후, 의료원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관리·감독을 받아 사용한다.

⑤ 발전기금의 배분 및 사용은 의료원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14조(환불) ① 제4조 제④항에 반하거나,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발전기금을 환불 해 주어야 한다.

② 환불은 모금부서에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재무관리 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발전기금을 이미 사용했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자가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은 불가하다.

제15조(마감) 납입이 완료된 발전기금은 매월 7일까지 재무관리부서와 모금부서 간에 상호 검증을 마친 후에 마감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 발전기금의 회계처리는 의료원 및 산하기관의 재무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발전기금은 목적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③ 의료원 및 산하 모금기관의 재무관리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모금부서 및 성의교정 발전기금팀과 기부금 입출금내역, 이자, 잔액 등의 기부금 계좌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금의 회계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홍보) 기부금의 약정, 납입, 사용내역을 홍보 매체를 통해서 기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익명 처리한다.

제18조(보고) ① 모금기관장은 매월 10일까지 발전기금 모금 현황을 의료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기부금관리시스템으로 약정, 납입, 사용 등의 제반 업무를 완료하여 매월 10일 이전에 마감한 경우, 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매월 15일까지 전 항의 현황을 취합하여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기부금관리시스템으로 취합이 완료된 경우, 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의료원으로의 보고는 단위 기관 기획팀에서 주관하며, 학교법인으로의 보고는 성의교정 발전기금팀에서 주관한다.

제19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범위 내 기관에 기부한 모든 기부금을 합산하여 예우 적용 금액을 산출한다.

③ 기부자 예우는 「CMC 발전기금 예우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제2조 범위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0조(발전기금 유치자에 대한 예우) 발전기금 조성에 직접 관여하여 상당액 이상의 기금을 유치한 교직원 및 외부인사에게는 별도로 예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업무감사) 발전기금 주관부서, 관리부서 및 사용처는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의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기부금관리시스템) ① 빨전기금 약정, 납입, 배분, 사용 및 보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기부금관리시스템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모든 모금기관에서는 기부금관리시스템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성의교정 빨전기금팀에서 주관한다.

제23조(발전기금 실무협의체) ① 의료원에는 기부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 및 시스템의 변경·개선을 위하여 발전기금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발전기금 실무협의체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은 의료원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4조(정보관리) 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입력자 정보(IP, Login 정보 등)을 수집 할 수 있다.

② 기부자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③ 빨전기금 관련 모든 정보의 보관 및 폐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5조(비밀유지) 업무상 획득한 기부자 정보는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 및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기부자 정보 유출 시에는 의료원 인사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기타 빨전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약정, 납입, 배분, 사용, 보고 된 빨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